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7월 1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51호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2조”를 “제43조의3, 제52조, 제59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원”을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

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보 칙”을 “공동주택 감사”로 한다.

제5장에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감사 대상) ① 공동주택 감사대상은 법 제59조에 정한사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미실시 사유를 명기하여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 요청) 제26조에 따른 감사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3호 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연명부(별지 제14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요청인은 각 세대 당 1명으로 한다.

제28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감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대상 및 범위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반 구성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감사계획 통보) 시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편성·운영한다.

② 감사반장은 건축과장이 되고 반원은 해당부서 공무원과 타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명할 수 있다.

이 때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감사관을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전문 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감사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29조의 절차에 따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기타 특기사항

제34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시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의4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입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사법기관의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 및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6장(제3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 <u>제52조</u> 및 임대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제43조의3, 제52조, 제59조</u>----- ----- -----.</p>
<p>제3조(종합계획수립)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의 공동주택관리비용 <u>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u>하여야 한다.</p>	<p>제3조(종합계획수립) ① ----- ----- -----<u>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u>-----.</p>
<p>② (생략) <u><신 설></u></p>	<p>② (현행과 같음) <u>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u> <u>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u> <u>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u> <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u> <u>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u></p>

제5장 보 칙

<신 설>

사일로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
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
정도가 심각하여 지속적인 관리
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
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장 공동주택 감사

제26조(감사 대상) ① 공동주택
감사대상은 법 제59조에 정한사
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
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
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
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
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
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대상에
서 제외될 경우 미실시 사유를

<신 설>

명기하여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 요청) 제26조에 따른 감사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3호 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연명부(별지 제14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요청인은 각 세대당 1명으로 한다.

<신 설>

제28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감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감사기간
- 2. 감사대상 및 범위
-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 4. 감사반 구성
-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9조(감사계획 통보) 시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

<신 설>

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편성·운영한다.

② 감사반장은 건축과장이 되고 반원은 해당부서 공무원과 타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명할 수 있다. 이 때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감사관을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시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전문 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⑤제2항 단서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감사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29조의 절차에 따라

<신 설>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 설>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3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신 설>

7. 현지 조치사항

8. 기타 특기사항

제34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시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의4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입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사법기관의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 및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
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장 보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단지	단지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소			
요청인 대표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업	
	주소			
동의인수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p>「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요청인 대표 (인)</p> <p>군산시장 귀하</p>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14호 서식]

요 청 인 연 명 부

□ 단 지 명 :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 업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통 선*



2015년 7월 1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52호

군산시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이란 어촌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어촌의 소득 증대 및 어촌활성화를 위해 지역 수산물이나 가공한 상품을 판매하고 숙박이나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 관광 특성화마을로 군산시에서 어촌체험마을로 지원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어촌체험마을 시설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안내소 등의 소유자로 시설을 운영하는 군산시장 또는 마을(어촌계 등)을 말한다.
4. "수탁운영자"란 관리자에게 위탁을 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안내소
2. 어촌체험 관련 시설
3. 식당 및 숙박 시설
4. 수산물 및 특산품 전시판매장
5. 교육 및 홍보시설
6. 그 밖에 운영 관련 부대시설

제5조(사업 및 기능)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 교육·홍보, 숙박, 식당, 판매,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농어촌체험관련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①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은 관리자가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마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받은 자는 수탁운영자가 된다.

② 위탁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수탁결정통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의 위탁 운영관리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수탁운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수탁운영자의 자격 등) ① 제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운영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어촌계 또는 마을
2.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단체 등

②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안내소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시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2. 위탁 의무 및 조건 등을 위반 할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비품 등은 원상복구 한 후 위탁자가 정하는 기간 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운영자는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각종사고, 재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수탁운영자가 시행한다.

⑤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증축·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으며,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의 손실·망실과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등) ①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한다.

1.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수탁운영자 자체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3. 수탁운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내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마을대표(이장 또는 어촌계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마을어촌계장, 마을거주주민, 학계 또는 해양생태 전문가,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자 및 기타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은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마을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장으로 한다. 사무장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⑧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위탁시설 사용료의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사용료 등)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관리자 또는 수탁자운영자가 정해놓은 금액에 따라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 기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2조(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시설사용료의 사용 등) ① 징수한 시설 사용료는 시설의 운영·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수탁운영자의 공동이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징수된 시설사용료는 별도의 계좌에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 내역에 대하여 매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 및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자
4. 정신이상인 자
5. 흉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 등을 소지한 자
6. 기타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할 때 수탁운영자에게 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자의 영업내용, 장부,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허가조건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군산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탁 신 청 서

1. 시설명 : 군산시 ○○○ 어촌체험마을

2. 신청자 기재사항

법인(단체) 명		법 인 구 분	시설(), 지원()
허가(등록)기관		허가(등록)일자	
허가(등록)번호		법인(단체)목적사업	
대표이사 성명		대표이사 주민번호	
대표이사 주소			
법인(단체) 현 소재지			
재 정 상 태	동산 :	원, 부동산 :	원

3. 제출서류

- 가. 사업계획서
- 나.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 다. 대표자 이력서
- 라. 등기부등본 또는 어촌계 현황 1부.

4. 약정사항

-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운영하여야 함.
-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군산시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단체) 대표자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수탁결정통지서

시설명 : 군산시 ○○○ 어촌체험마을

수탁자 성명 :

주소 :

귀 법인(단체)은 「군산시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시와 협약하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탁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7월 1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53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현재 「의료법」에 따른”을 “현재”로,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를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제2호 중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을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로 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피농공단지

제13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을 “제1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48조”를 “제12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현재----- -----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p>
<p>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p>	<p>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p>	<p>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 -----</p>

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생략)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체 및 법인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현행과 같음)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1. ~ 3. (생략)

<신설>

제13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임피농공단지

제13조(감면 신청 등) ① -----

-----제126조제1
항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

----- 제127조 -----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7월 1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54호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군산시 시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치매관리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 3. "초로기 치매"란 만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 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 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8.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9.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군산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의 시민
2.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는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해 인식표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부담)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 관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 제13조 치매등록 통계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환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치매관리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치매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센터 운영관련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치매 관련 전문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시장은 제7조의 지원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7월 1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255호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5천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만
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2만제곱미터”를 “3만제
곱미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사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보전관리지역 : <u>5천제곱미터</u> 미만</p> <p>2. 생산관리지역 : <u>1만제곱미터</u> 미만</p> <p>3. (생 략)</p> <p>4. 농 림 지 역 : <u>2만제곱미터</u> 미만</p>	<p>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1. _____<u>3만제곱미터</u>_____</p> <p>2. _____<u>3만제곱미터</u>_____</p> <p>3. (현행과 같음)</p> <p>4. _____<u>3만제곱미터</u>_____</p>
<p>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 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 각목의 토지가 ~ 라. (생 략)</p> <p><신 설></p> <p>3. ~ 5. (생 략)</p> <p>② (생 략)</p>	<p>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_____</p> <p>_____</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도서 지역의 경사도 및 경사도 산정 방식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군산시 공고 제2015-1052호

군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따라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4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없는 불필요한 규제등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업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입주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므로 토지의 매입비, 조성사업의 공사비 등을 입주자 부담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개정(안 제6조)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완화 하였으나 여전히 과도한 입주자격 제한과 중복조항이 있어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에서 확실한 재정능력 요구 삭제 및 중복조항 삭제(안 제15조)

다. 입주기업의 산업용지 처분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임의처분을 제한하도록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8조의2에 적합하게 개선(안 제22조)

라. 불분명하고 과도한 환매권행사 조건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맞게 명확히 하고 중복사항 정비 (안 제 23조)

마. 공동으로 부담하는 시설의 범위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공동부담금)에서 정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유지보수 미 부담금이 책정기준을 사용자와 협의 결정하여 기업부담 가중을 완화(안 제25조)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21일까지 군산시장(투자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처 : 군산시청 투자지원과

- (1)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우편번호 573-703)
- (2) 연 락 처 : 063-454-2752 (FAX 063 - 454 -2729)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문 의 처 : 군산시청 투자지원과 산단관리계 (063-454-2752)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업”발전을 “산업”발전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하고, 시장(이하 시장 이라”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입주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이하 수익자”를 “자(이하 “수익자””로 한다.

제9조 중 “군산시(이하 시 라”를 “군산시(이하 “시”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상업무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에”를 “보상업무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에”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

로, “각호”를 “각 호”로, “추징하여야”를 “추가징수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를 “(공동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단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정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 부담”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 라”를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8조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유지보수비”를 “하며 유지보수비 및 부담금의”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 중 “계리하도록”을 “회계처리 하도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5-1084호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운영 조례제정 입법예고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 수산물 위판에서 가공·판매, 개발(R&D)을 통해 종합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수산 식품의 가공, 물류, 판매 등 복합기능을 가진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건립한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기간, 사용료, 취소 및 청문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1조)

나. 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다. 권리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마.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 반여부와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에게 서면 또는 FAX(063-452-8200), e-mail(rnstks@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또는 e-mail 제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산물 연구·가공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수산물가공업체”란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산물가공시설”이란 수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가공공장 및 냉동 창고 등 사용수익허가 대상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설의 명칭·위치) ① 명칭은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이하 “수산물 거점단지”라 한다)라 한다.

② 위치는 군산시 내항2길 296(해망동)으로 한다.

제4조 (시설의 구분) 수산물 거점단지의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판물류시설”은 위판·물류동에 있는 시설(위판장, 가공공장 1개소, 냉장·냉동창고 등)
2. “연구가공시설”은 연구·가공동에 있는 시설(가공공장 6개소, 지원 사무소, 연구/지원센터, 연구사무실 등)

제5조 (사업) 수산물 거점단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시설의 지원
2. 수산물가공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3. 수산가공품의 전문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4. 식품위생·안전시설을 통한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제6조 (운영관리) 수산물 거점단지 시설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판·물류동, 연구·가공동을 각각 분리하여 수산관련 지구별·업종별 수협, 영어조합법인, 수산관련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시장은 수산물 거점단지의 시설을 사용·수익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2. 수산물 거점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②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8조 (사용·수익허가 및 기간) ① 수산물 거점단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산물 거점단지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에 시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제10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사용·수익 허가자는 사용·수익허가 및 갱신 할 때 사용기간이 만료되

거나 사용료가 연체되는 등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건물의 명도를 위하여 “재소전 화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비용은 사용·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사용료) ① 수산물 거점단지 시설의 사용료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6조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1월, 4월, 7월, 10월)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료를 3개월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시장이 그 밖에 허가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 (청문)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비 등의 징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보험료 및 그 밖에 시설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운영관리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양도의 제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시설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손해배상) 시장의 승인 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개축 등 형태를 변경하거나, 파손, 훼손 및 기타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5-88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금광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지적도근점(10점), 지경1공구 경지 재정리사업에 따른 지적도근점(81점) 측량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6. 19.

군 산 시 장

번호	기준점번호	평면직각좌표		세계측지계			투영원점	정표고(m)	소재지	관측일자	표지재질
				위도(도-분-초)	평면직각좌표(m)						
				경도(도-분-초)							
				타원체고(m)							
1	52611	X	275593.44	35°58'49"	X	375899.84	중부	27.21	오룡동 836-129	2015. 5.18.	철재
		Y	173643.70	126°42'31"	Y	173716.14					
				51.11							
2	52612	X	275652.25	35°58'51"	X	375958.65	중부	28.83	금광동 157-68	2015. 5.18.	철재
		Y	173618.06	126°42'30"	Y	173690.51					
				52.73							
3	52613	X	275552.14	35°58'48"	X	375858.53	중부	16.67	오룡동 834-154	2015. 5.18.	철재
		Y	173546.32	126°42'27"	Y	173618.77					
				40.57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4	52614	X	275586.76	35°58'49"	X	375893.16	중부	15.88	오룡동 938	2015. 5.18.	철재
		Y	173535.85	126°42'27"	Y	173608.30					
				39.78							
5	52615	X	275547.78	35°58'48"	X	375854.17	중부	10.95	신평동 878-3	2015. 5.18.	철재
		Y	173453.72	126°42'23"	Y	173526.17					
				34.84							
6	52616	X	275467.45	35°58'45"	X	375773.84	중부	10.09	오룡동 938	2015. 5.18.	철재
		Y	173454.93	126°42'23"	Y	173527.38					
				33.99							
7	52617	X	275629.18	35°58'50"	X	375935.57	중부	12.06	금광동 172	2015. 5.18.	철재
		Y	173486.37	126°42'25"	Y	173558.82					
				35.95							
8	52618	X	275710.66	35°58'53"	X	376017.06	중부	8.16	금광동 167-17	2015. 5.18.	철재
		Y	173544.18	126°42'27"	Y	173616.62					
				32.05							
9	52619	X	275749.29	35°58'54"	X	376055.68	중부	6.92	금광동 170-9	2015. 5.18.	철재
		Y	173594.98	126°42'29"	Y	173667.42					
				30.82							
10	52620	X	275765.50	35°58'55"	X	376071.90	중부	15.00	금광동 157-5	2015. 5.18.	철재
		Y	173647.46	126°42'31"	Y	173719.91					
				38.89							
11	52621	X	270406.70	35°56'01"	X	370713.28	중부	4.56	대야면 지경리 1194-1	2015. 5.18.	철재
		Y	180461.63	126°47'03"	Y	180534.14					
				28.61							
12	52622	X	270376.53	35°56'00"	X	370683.11	중부	4.62	대야면 지경리 1194-2	2015. 5.18.	철재
		Y	180525.93	126°47'06"	Y	180598.45					
				28.67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13	52623	X	270184.06	35°55'54"	X	370490.65	중부	4.52	대야면 지경리 1195-7	2015. 5.18.	철재
		Y	180447.58	126°47'03"	Y	180520.10					
				28.57							
14	52624	X	270223.17	35°55'55"	X	370529.75	중부	4.51	대야면 지경리 1195-3	2015. 5.18.	철재
		Y	180358.73	126°46'59"	Y	180431.25					
				"		28.55					
15	52625	X	270031.39	35°55'49"	X	370337.97	중부	4.42	대야면 지경리 1197-3	2015. 5.18.	철재
		Y	180272.80	126°46'56"	Y	180345.32					
				"		28.46					
16	52626	X	269966.44	35°55'47"	X	370273.02	중부	4.44	대야면 지경리 1197-7	2015. 5.18.	철재
		Y	180420.16	126°47'02"	Y	180492.68					
				"		28.49					
17	52627	X	269943.05	35°55'46"	X	370249.64	중부	4.55	대야면 지경리 1636-4	2015. 5.18.	철재
		Y	180486.23	126°47'04"	Y	180558.75					
				"		28.60					
18	52628	X	269808.55	35°55'42"	X	370115.14	중부	4.55	대야면 지경리 1637-3	2015. 5.18.	철재
		Y	180532.35	126°47'06"	Y	180604.88					
				"		28.60					
19	52629	X	269658.29	35°55'37"	X	369964.88	중부	4.55	대야면 지경리 1637-9	2015. 5.18.	철재
		Y	180589.32	126°47'09"	Y	180661.85					
				"		28.60					
20	52630	X	269124.19	35°55'20"	X	369430.79	중부	4.55	회현면 원우리 3-6	2015. 5.18.	철재
		Y	180795.42	126°47'17"	Y	180867.96					
				"		28.61					
21	52631	X	269011.99	35°55'16"	X	369318.59	중부	4.56	회현면 증석리 95-1	2015. 5.18.	철재
		Y	180838.55	126°47'19"	Y	180911.09					
				"		28.62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22	52632	X	268903.27	35°55'13"	X	369209.87	중부	4.31	회현면 증석리 94-3	2015. 5.18.	철재
		Y	180886.08	126°47'20"	Y	180958.62					
				28.36							
23	52633	X	268845.70	35°55'11"	X	369152.31	중부	4.31	회현면 증석리 94-11	2015. 5.18.	철재
		Y	181014.02	126°47'26"	Y	181086.56					
				28.37							
24	52634	X	268711.36	35°55'06"	X	369017.96	중부	4.44	회현면 증석리 95-10	2015. 5.18.	철재
		Y	180953.29	126°47'23"	Y	181025.84					
				28.49							
25	52635	X	268614.22	35°55'03"	X	368920.83	중부	4.39	회현면 증석리 95-13	2015. 5.18.	철재
		Y	180994.66	126°47'25"	Y	181067.21					
				28.45							
26	52636	X	268443.80	35°54'58"	X	368750.40	중부	4.80	회현면 증석리 615	2015. 5.18.	철재
		Y	180830.05	126°47'18"	Y	180902.61					
				28.85							
27	52637	X	268566.86	35°55'02"	X	368873.46	중부	4.33	회현면 증석리 96-12	2015. 5.18.	철재
		Y	180793.68	126°47'17"	Y	180866.24					
				28.39							
28	52638	X	268715.23	35°55'07"	X	369021.83	중부	4.39	회현면 증석리 96-8	2015. 5.18.	철재
		Y	180736.08	126°47'15"	Y	180808.63					
				28.44							
29	52639	X	268898.69	35°55'13"	X	369205.29	중부	4.82	회현면 학당리 28-3	2015. 5.18.	철재
		Y	180654.71	126°47'11"	Y	180727.26					
				28.87							
30	52640	X	269047.15	35°55'17"	X	369353.75	중부	4.86	회현면 원우리 31-1	2015. 5.18.	철재
		Y	180597.87	126°47'09"	Y	180670.41					
				28.91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31	52641	X	269201.25	35°55'22"	X	369507.84	중부	4.84	회현면 원우리 5-17	2015. 5.18.	철재
		Y	180547.98	126°47'07"	Y	180620.52					
				28.89							
32	52642	X	269358.38	35°55'27"	X	369664.97	중부	4.52	회현면 원우리 25-8	2015. 5.18.	철재
		Y	180474.75	126°47'04"	Y	180547.29					
				28.57							
33	52643	X	269508.38	35°55'32"	X	369814.96	중부	4.95	회현면 원우리 25-3	2015. 5.18.	철재
		Y	180420.94	126°47'02"	Y	180493.48					
				28.99							
34	52644	X	269645.48	35°55'37"	X	369952.07	중부	4.78	회현면 원우리 18-9	2015. 5.18.	철재
		Y	180363.03	126°47'00"	Y	180435.56					
				28.82							
35	52645	X	269786.28	35°55'41"	X	370092.86	중부	4.30	회현면 원우리 16-3	2015. 5.18.	철재
		Y	180302.92	126°46'57"	Y	180375.45					
				28.34							
36	52646	X	269852.20	35°55'43"	X	370158.78	중부	4.51	회현면 원우리 17-1	2015. 5.18.	철재
		Y	180161.74	126°46'52"	Y	180234.27					
				28.55							
37	52647	X	269686.21	35°55'38"	X	369992.79	중부	4.74	회현면 원우리 526	2015. 5.18.	철재
		Y	180011.10	126°46'46"	Y	180083.63					
				28.78							
38	52648	X	269631.67	35°55'36"	X	369938.25	중부	4.52	회현면 원우리 19-4	2015. 5.18.	철재
		Y	180138.45	126°46'51"	Y	180210.98					
				28.56							
39	52649	X	269566.87	35°55'34"	X	369873.45	중부	4.52	회현면 원우리 19-8	2015. 5.18.	철재
		Y	180284.15	126°46'56"	Y	180356.69					
				28.57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채 고 (m)							
40	52650	X	269483.20	35°55'31"	X	369789.78	중부	4.61	회현면 원우리 21-3	2015. 5.18.	철재
		Y	179955.90	126°46'43"	Y	180028.43					
				28.65							
41	52651	X	269424.10	35°55'30"	X	369730.68	중부	4.63	회현면 원우리 21-6	2015. 5.18.	철재
		Y	180089.50	126°46'49"	Y	180162.03					
				28.67							
42	52652	X	269362.79	35°55'28"	X	369669.38	중부	4.66	회현면 원우리 26-2	2015. 5.18.	철재
		Y	180261.38	126°46'56"	Y	180333.92					
				28.70							
43	52653	X	269249.63	35°55'24"	X	369556.21	중부	4.66	회현면 원우리 26-7	2015. 5.18.	철재
		Y	180303.34	126°46'57"	Y	180375.88					
				28.71							
44	52654	X	268975.41	35°55'15"	X	369282.00	중부	4.68	회현면 학당리 29-1	2015. 5.18.	철재
		Y	180408.12	126°47'01"	Y	180480.67					
				28.72							
45	52655	X	268751.89	35°55'08"	X	369058.49	중부	4.45	회현면 학당리 29-7	2015. 5.18.	철재
		Y	180493.70	126°47'05"	Y	180566.25					
				28.50							
46	52656	X	268626.59	35°55'04"	X	368933.19	중부	4.47	회현면 학당리 29-13	2015. 5.18.	철재
		Y	180541.69	126°47'07"	Y	180614.25					
				28.51							
47	52657	X	268489.98	35°54'59"	X	368796.57	중부	4.47	회현면 학당리 29-16	2015. 5.18.	철재
		Y	180593.90	126°47'09"	Y	180666.46					
				28.52							
48	52658	X	268369.75	35°54'55"	X	368676.34	중부	4.74	회현면 증석리 615	2015. 5.18.	철재
		Y	180634.02	126°47'10"	Y	180706.58					
				28.79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채 고 (m)
49	52659	X	268452.02	35°54'58"	X	368758.62	중부	4.49	회현면 학당리 32-13	2015. 5.18.	철재	
		Y	180383.12	126°47'00"	Y	180455.68						
				28.53								
50	52660	X	268602.05	35°55'03"	X	368908.65	중부	4.46	회현면 학당리 32-9	2015. 5.18.	철재	
		Y	180325.79	126°46'58"	Y	180398.35						
				28.51								
51	52661	X	268751.84	35°55'08"	X	369058.43	중부	4.42	회현면 학당리 32-4	2015. 5.18.	철재	
		Y	180268.47	126°46'56"	Y	180341.02						
				28.46								
52	52662	X	268902.58	35°55'13"	X	369209.17	중부	4.62	회현면 학당리 31-3	2015. 5.18.	철재	
		Y	180211.03	126°46'54"	Y	180283.58						
				28.66								
53	52663	X	269055.03	35°55'18"	X	369361.61	중부	4.53	회현면 원우리 530	2015. 5.18.	철재	
		Y	180148.97	126°46'51"	Y	180221.52						
				28.57								
54	52664	X	269199.60	35°55'22"	X	369506.18	중부	4.56	회현면 원우리 23-7	2015. 5.18.	철재	
		Y	180077.75	126°46'48"	Y	180150.29						
				28.59								
55	52665	X	269264.69	35°55'24"	X	369571.26	중부	4.57	회현면 원우리 23-3	2015. 5.18.	철재	
		Y	179931.26	126°46'42"	Y	180003.80						
				28.60								
56	52666	X	269105.03	35°55'19"	X	369411.61	중부	4.62	회현면 원우리 22-2	2015. 5.18.	철재	
		Y	179772.80	126°46'36"	Y	179845.35						
				28.65								
57	52667	X	269039.97	35°55'17"	X	369346.55	중부	4.56	회현면 원우리 22-5	2015. 5.18.	철재	
		Y	179919.73	126°46'42"	Y	179992.28						
				28.60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채 고 (m)							
58	52668	X	268994.45	35°55'16"	X	369301.03	중부	4.56	회현면 원우리 22-10	2015. 5.18.	철재
		Y	180022.77	126°46'46"	Y	180095.32					
				28.60							
59	52669	X	268813.36	35°55'10"	X	369119.94	중부	4.58	회현면 학당리 1242	2015. 5.18.	철재
		Y	180010.88	126°46'46"	Y	180083.43					
				28.62							
60	52670	X	268713.26	35°55'06"	X	369019.85	중부	4.49	회현면 학당리 36-7	2015. 5.18.	철재
		Y	180057.43	126°46'47"	Y	180129.99					
				28.52							
61	52671	X	268526.42	35°55'00"	X	368833.01	중부	4.49	회현면 학당리 36-12	2015. 5.18.	철재
		Y	180129.04	126°46'50"	Y	180201.59					
				28.53							
62	52672	X	268377.09	35°54'56"	X	368683.68	중부	4.52	회현면 학당리 36-17	2015. 5.18.	철재
		Y	180186.42	126°46'53"	Y	180258.98					
				28.56							
63	52673	X	268178.63	35°54'49"	X	368485.22	중부	4.47	회현면 증석리 376-1	2015. 5.18.	철재
		Y	180262.54	126°46'56"	Y	180335.10					
				28.51							
64	52674	X	268029.00	35°54'44"	X	368335.59	중부	4.46	회현면 증석리 376-5	2015. 5.18.	철재
		Y	180319.78	126°46'58"	Y	180392.35					
				28.50							
65	52675	X	267879.52	35°54'39"	X	368186.12	중부	4.47	회현면 증석리 376-10	2015. 5.18.	철재
		Y	180377.06	126°47'00"	Y	180449.63					
				28.51							
66	52676	X	267761.82	35°54'36"	X	368068.42	중부	4.10	회현면 증석리 386-1	2015. 5.18.	철재
		Y	180421.42	126°47'02"	Y	180493.99					
				28.15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채 고 (m)
67	52677	X	267650.61	35°54'32"	X	367957.21	중부	4.18	회현면 증석리 386-4	2015. 5.18.	철재	
		Y	180464.74	126°47'04"	Y	180537.31						
				28.23								
68	52678	X	267499.71	35°54'27"	X	367806.31	중부	4.21	회현면 증석리 386-9	2015. 5.18.	철재	
		Y	180522.52	126°47'06"	Y	180595.10						
				28.26								
69	52679	X	267424.62	35°54'25"	X	367731.22	중부	4.29	회현면 증석리 388-11	2015. 5.18.	철재	
		Y	180326.04	126°46'58"	Y	180398.62						
				28.34								
70	52680	X	267576.48	35°54'30"	X	367883.08	중부	4.30	회현면 증석리 388-4	2015. 5.18.	철재	
		Y	180268.59	126°46'56"	Y	180341.16						
				28.34								
71	52681	X	267686.54	35°54'33"	X	367993.13	중부	4.16	회현면 증석리 449-1	2015. 5.18.	철재	
		Y	180220.00	126°46'54"	Y	180292.58						
				28.20								
72	52682	X	267820.09	35°54'37"	X	368126.69	중부	4.56	회현면 증석리 379-12	2015. 5.18.	철재	
		Y	180175.56	126°46'52"	Y	180248.13						
				28.61								
73	52683	X	267964.55	35°54'42"	X	368271.14	중부	4.56	회현면 증석리 379-5	2015. 5.18.	철재	
		Y	180120.39	126°46'50"	Y	180192.96						
				28.60								
74	52684	X	268103.92	35°54'47"	X	368410.50	중부	4.53	회현면 증석리 379-1	2015. 5.18.	철재	
		Y	180067.14	126°46'48"	Y	180139.71						
				28.57								
75	52685	X	268226.91	35°54'51"	X	368533.50	중부	4.41	회현면 증석리 378-15	2015. 5.18.	철재	
		Y	180020.08	126°46'46"	Y	180092.65						
				28.45								

번호	기준점번호	평면직각좌표(m)		세계측지계		투영원점	정표고(m)	소재지	관측일자	표지재질	
				위도(도-분-초)							평면직각좌표(m)
				경도(도-분-초)							
				타원체고(m)							
76	52686	X	268376.96	35°54'56"	X	368683.55	중부	4.34	회현면 학당리 38-9	2015. 5.18.	철재
		Y	179962.80	126°46'44"	Y	180035.37					
				28.38							
77	52687	X	268526.81	35°55'00"	X	368833.39	중부	4.41	회현면 학당리 38-3	2015. 5.18.	철재
		Y	179905.49	126°46'41"	Y	179978.05					
				28.45							
78	52688	X	268815.28	35°55'10"	X	369121.86	중부	4.52	회현면 학당리 24-11	2015. 5.18.	철재
		Y	179907.88	126°46'41"	Y	179980.43					
				28.56							
79	52689	X	268880.37	35°55'12"	X	369186.95	중부	4.56	회현면 학당리 24-5	2015. 5.18.	철재
		Y	179860.80	126°46'36"	Y	179833.36					
				28.59							
80	52690	X	268929.12	35°55'13"	X	369235.69	중부	4.58	회현면 학당리 24-1	2015. 5.18.	철재
		Y	179651.14	126°46'31"	Y	179723.69					
				28.61							
81	52691	X	268730.28	35°55'07"	X	369036.85	중부	4.44	회현면 학당리 1270-3	2015. 5.18.	철재
		Y	179602.52	126°46'29"	Y	179675.08					
				28.47							
82	52692	X	268650.38	35°55'04"	X	368956.96	중부	4.46	회현면 학당리 1270-7	2015. 5.18.	철재
		Y	179769.91	126°46'36"	Y	179842.47					
				28.50							
83	52693	X	268467.33	35°54'58"	X	368773.91	중부	4.20	회현면 학당리 1270-2 1	2015. 5.18.	철재
		Y	179838.89	126°46'39"	Y	179911.45					
				28.24							
84	52694	X	268197.52	35°54'50"	X	368504.11	중부	4.34	회현면 학당리 1268-7	2015. 5.18.	철재
		Y	179777.14	126°46'36"	Y	179849.71					
				28.37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85	52695	X	268058.07	35°54'45"	X	368364.65	중부	4.40	회현면 학당리 1268-1 3	2015. 5.18.	철재
		Y	179830.08	126°46'38"	Y	179902.65					
				28.44							
86	52696	X	267936.32	35°54'41"	X	368242.90	중부	4.43	회현면 학당리 1271-5 1번지	2015. 5.18.	철재
		Y	179891.70	126°46'41"	Y	179964.27					
				28.46							
87	52697	X	267833.47	35°54'38"	X	368140.06	중부	4.47	회현면 학당리 1271-5 6	2015. 5.18.	철재
		Y	179931.14	126°46'43"	Y	180003.72					
				28.51							
88	52698	X	267731.42	35°54'35"	X	368038.01	중부	4.20	회현면 학당리 1289	2015. 5.18.	철재
		Y	180039.88	126°46'47"	Y	180112.46					
				28.24							
89	52699	X	267612.52	35°54'31"	X	367919.11	중부	4.40	회현면 학당리 1272-2 9	2015. 5.18.	철재
		Y	180015.69	126°46'46"	Y	180088.27					
				28.44							
90	52700	X	267475.17	35°54'26"	X	367781.76	중부	4.32	회현면 학당리 1269-3 5	2015. 5.18.	철재
		Y	180053.74	126°46'47"	Y	180126.33					
				28.36							
91	52701	X	267326.83	35°54'21"	X	367633.42	중부	4.15	회현면 학당리 1269-4 1	2015. 5.18.	철재
		Y	180110.11	126°46'50"	Y	180182.70					
				28.19							

군산시 고시 제2015-89 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6월 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미룡동 903-1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2) 명 칭 : 군산시 평생교육관 신축공사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시 설 명	시 설 결 정		실시계획인가(금회)	비 고
	위 치	면적(m ²)	면 적(m ²)	
공공청사 (주민복지자치센터)	미 룡 동 903-1	828	사업면적 : 828 건축면적 : 463.88 연 면 적 : 1,566.51	최초결정일 전북고279 (00.7.7)

3.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공영사업과)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2016. 08.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합 계				828	828					
1	군산시 미룡동	903-1	대	828.	828	군산시				

군산시 고시 제 2015-91 호

도로명주소(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7. 01.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28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5-92호

금강호관광지(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금강호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관광진흥과(454-335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1일

군 산 시 장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금강호관광지 (유원지)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일대	648,380	648,380	변경없음

○ 금강호관광지 조성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조서

- 가. 사업의 개요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총괄표
- 다.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 라. 지형도면 - 별첨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나.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조서
-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총괄표
- 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조성 결정(변경) 조서
- 마. 지형도면 - 별첨

* 토지조서 및 관계도면: 실음생략 (열람장소: 관광진흥과)

금강호관광지 조성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1. 관 광 지 명 : 금강호관광지
2.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11-1번지 일원
3. 면 적 : 648,380m² - 변경없음
4.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사유)목적
 - 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호텔구역 조정 및 상가시설(3-5(29)블록)
토지구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현 지적현황을 반영하여 적정규모로 블록 세분화
 - 산159-27번지(임야) : 호텔 구역에서 제척 → 상가로 용도 변경
 - 상가 3-5(29)블록 1동 4,353m² → 상가 3개블록 3동 4,117m², 녹지 236m²
 - 나. 시민 및 관광객들의 여가수요 충족을 위하여 다목적광장(1-2(7),
1-2(8))을 야영장으로 시설계획 변경 및 세부시설 명칭 변경
 - 광장 : 부지면적 (감)3,421m² → 야영장 : 부지면적 (증)3,421m²
 - 세부시설 명칭 변경 : 마이크캠핑장 → 야영장
5.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7조 의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
6. 사 업 비 : 155,076백만원(공공 44,803백만원, 민자 110,273백만원) - 변경없음
7. 사업기간 : 1991년 ~ 2022년 (변경없음)
8.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군 산 시 장 (인)

금강호관광지 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조서

가. 사업의 개요

- 관광지의 명칭 : 금강호관광지
- 관광지의 위치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11-1번지 일원
- 관광지의 면적 : 648,380㎡ - 변경없음
- 사업기간 : 1991년 ~ 2022년 12월 31일 -변경없음
- 사업비 : 155,076백만원 (공공 44,803백만원, 민자 110,273백만원) -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 주요시설 : 명칭변경(바이크캠핑장→야영장)
 - 공공 : 도로, 주차장, 화장실, 자연생태체험단지, 야영장, 철새조망대 등
 - 민자 : 관광호텔, 유희시설, 상가시설, 호텔, 황토흙집체험단지, 관광펜션 등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총괄표

구 분	토지이용계획				건축면적		연면적		시 설 명
	면적(㎡)		비율(%)		(㎡)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648,380	648,380	100.0	100.0	38,619	38,485	107,736	107,292	
공공편의 시설지구	166,184	162,971	25.6	25.1	1,949	1,949	2,757	2,757	주차장, 광장, 화장실 하구둑관리시설 등
숙박시설 지구	41,644	41,286	6.4	6.4	13,881	13,773	41,644	41,286	관광호텔, 황토흙집 체험 단지, 호텔, 관광펜션
상가시설 지구	52,358	52,272	8.1	8.1	15,745	15,719	48,851	48,765	일반음식점, 매점, 상가시설
운동오락 시설지구	9,781	9,781	1.5	1.5	1,620	1,620	3,240	3,240	기계유희시설, 테니스 장
휴양문화 시설지구	189,115	192,536	29.2	29.7	5,260	5,260	11,080	11,080	조각(기념비), 공원(어린 이), 자연생태체험단 지, 야영장, 철새조망대 등
기타시설 지구	189,298	189,534	29.2	29.2	164	164	164	164	녹지, 기타시설

□ 세부시설 결정 조서(변경)

1) 시설총괄조서(변경)

구분	번호		세부시설		부지면적(㎡)		시설면적(㎡)				규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동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648,380	648,380	38,619	38,485	107,736	107,292	-	-	102	105		
소 계					166,184	162,971	1,949	1,949	2,757	2,757	-	-	15	15		
공공 편의 시설 지구	1-1	1-1	주차장	주차장	38,687	38,687	-	-	-	-	-	-	-	-		
	1-2	1-2	광장	광장	18,994	15,573	-	-	-	-	-	-	-	-		
	1-3	1-3	화장실	화장실	2,373	2,373	261	261	261	261	1	1	3	3		
	1-5	1-5	하구둑 관리시설	하구둑 관리시설	1,540	1,540	264	264	414	414	2	2	2	2		
	1-6	1-6	농어촌공 사	농어촌공 사	10,462	10,462	1,360	1,360	2,018	2,018	1,2,5	1,2,5	9	9		
	1-8	1-8	관리사무 소	관리사무 소	200	200	64	64	64	64	1	1	1	1		
	-	-	도로	도로	93,928	94,136	-	-	-	-	-	-	-	-	-	
	소 계					41,644	41,286	13,881	13,773	41,644	41,286	-	-	18	18	
숙박 시설 지구	2-1	2-1	관광호텔	관광호텔	19,832	19,832	5,948	5,948	19,832	19,832	7	7	3	3		
	2-3	2-3	향토휴집 체험단지	향토휴집 체험단지	4,436	4,436	1,773	1,773	4,436	4,436	3	3	7	7		
	2-4	2-4	호텔	호텔	7,901	7,543	2,370	2,262	7,901	7,543	5	5	1	1		
	2-5	2-5	관광펜션	관광펜션	9,475	9,475	3,790	3,790	9,475	9,475	3	3	7	7		
	소 계					52,358	52,272	15,745	15,719	48,851	48,765	-	-	35	38	
상가 시설 지구	3-2	3-2	일반음식 점	일반음식 점	8,383	8,383	2,640	2,640	5,280	5,280	4	4	2	2		
	3-4	3-4	매점	매점	664	664	130	130	260	260	4	4	1	1		
	3-5	3-5	상가시설	상가시설	43,311	43,225	12,975	12,949	43,311	43,225	4	4	32	35		
	소 계					9,781	9,781	1,620	1,620	3,240	3,240	-	-	6	6	
운동 오락 시설 지구	4-1	4-1	유희시설 (금강랜드) (관리시설 및 매점, 휴게음식 점 포함)	유희시설 (금강랜드) (관리시설 및 매점, 휴게음식 점 포함)	8,574	8,574	1,620	1,620	3,240	3,240	4층이하 (유기시설 40m이하)	4층이하 (유기시설 40m이하)	6	6		
	4-3	4-3	테니스장	테니스장	1,207	1,207	-	-	-	-	-	-	-	-		

구 분	번호		세부시설		부지면적(㎡)		시설면적(㎡)				규모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동수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소 계					189,115	192,536	5,260	5,260	11,080	11,080	-	-	27	27	
휴 양 화 학 지 구	5-6	5-6	조각 (기념비)	조각 (기념비)	2,521	2,521	-	-	-	-	-	-	-	-	
	5-7	5-7	공원 (어린이)	공원 (어린이)	1,192	1,192	-	-	-	-	-	-	-	-	
	5-9	5-9	체험학습 장 (편의시설: 소매점포함)	체험학습 장 (편의시설: 소매점포함)	650	650	110	110	220	220	2	2	1	1	
	5-15-0	15-1	자연생태 체험단지	자연생태 체험단지	65,157	65,157	1,640	1,640	3,840	3,840	4	4	6	6	
	5-15-1	15-1	마이크 캠핑장	야영장	25,267	28,688	510	510	1,020	1,020	4	4	5	5	
	5-15-2	15-1	철새조망 대	철새조망 대	38,697	38,697	3,000	3,000	6,000	6,000	11	11	15	15	
	5-15-3	15-1	야생화단 지	야생화단 지	55,631	55,631	-	-	-	-	-	-	-	-	-
소 계					189,298	189,534	164	164	164	164	-	-	1	1	
기 타 지 구	6-1	6-1	녹지	녹지	187,782	188,018	-	-	-	-	-	-	-	-	
	6-3	6-3	기타시설	기타시설	1,516	1,516	164	164	164	164	1	1	1	1	

2) 세부시설조서(변경)

구 분	번호		세부시설		부지면적(㎡)		시설면적(㎡)				규모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동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총 계					648,380	648,380	38,619	38,485	107,736	107,292	-	-	102	105		
소 계					166,184	162,971	1,949	1,949	2,757	2,757	-	-	15	15		
공 공 편 의 시 설 지 구	1-1(1)	1-1(1)	주차장	주차장	10,601	10,601	-	-	-	-	-	-	-	-		
	1-1(3)	1-1(3)	주차장	주차장	3,090	3,090	-	-	-	-	-	-	-	-		
	1-1(4)	1-1(4)	주차장	주차장	1,748	1,748	-	-	-	-	-	-	-	-		
	1-1(5)	1-1(5)	주차장	주차장	4,006	4,006	-	-	-	-	-	-	-	-		
	1-1(6)	1-1(6)	주차장	주차장	10,276	10,276	-	-	-	-	-	-	-	-		
	1-1(7)	1-1(7)	주차장	주차장	8,099	8,099	-	-	-	-	-	-	-	-		
	1-1(8)	1-1(8)	주차장	주차장	867	867	-	-	-	-	-	-	-	-		
	계 (1-1)_주차장					38,687	38,687	-	-	-	-	-	-	-	-	
	1-2(1)	1-2(1)	광장	광장	6,286	6,286	-	-	-	-	-	-	-	-		
	1-2(2)	1-2(2)	광장	광장	4,179	4,179	-	-	-	-	-	-	-	-		
	1-2(3)	1-2(3)	광장	광장	4,503	4,503	-	-	-	-	-	-	-	-		
	1-2(4)	1-2(4)	광장	광장	605	605	-	-	-	-	-	-	-	-		
	1-2(7)	1-2(7)	광장	광장	1,551	-	-	-	-	-	-	-	-	-		
	1-2(8)	1-2(8)	광장	광장	1,870	-	-	-	-	-	-	-	-	-		
	계 (1-2)_광장					18,994	15,573	-	-	-	-	-	-	-	-	
	1-3(1)	1-3(1)	화장실	화장실	1,173	1,173	81	81	81	81	1	1	1	1		
	1-3(3)	1-3(3)	화장실	화장실	486	486	120	120	120	120	1	1	1	1		
	1-3(5)	1-3(5)	화장실	화장실	714	714	60	60	60	60	1	1	1	1		
	계 (1-3)_화장실					2,373	2,373	261	261	261	261	1	1	3	3	
	1-5	1-5	하구독 관리시설	하구독 관리시설	1,540	1,540	264	264	414	414	2	2	2	2		
1-6	1-6	한국 농어촌공사	한국 농어촌공사	10,462	10,462	1,360	1,360	2,018	2,018	1,2,5	1,2,5	9	9			
1-8	1-8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200	200	64	64	64	64	1	1	1	1			
-	-	도로	도로	93,928	94,136	-	-	-	-	-	-	-	-			

구 분	번호		세부시설		부지면적 (㎡)		시설면적(㎡)				규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동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 계					41,644	41,286	13,881	13,773	41,644	41,286	-	-	18	18	
숙 박 시 설 지 구	2-1	2-1	관광호텔	관광호텔	19,832	19,832	2,568	5,948	12,682	19,832	7	7	3	3	
	2-3	2-3	황토흙집 체험단지	황토흙집 체험단지	4,436	4,436	1,773	1,773	4,436	4,436	3	3	7	7	
	2-4	2-4	호텔	호텔	7,901	7,543	2,370	2,262	7,901	7,543	5	5	1	1	
	2-5	2-5	관광펜션	관광펜션	9,475	9,475	3,790	3,790	9,475	9,475	3	3	7	7	
소 계					52,358	52,272	15,745	15,719	48,851	48,765	-	-	35	38	
	3-2(1)	3-2(1)	일반음식 점	일반음식 점	8,383	8,383	2,640	2,640	5,280	5,280	4	4	2	2	
계 (3-2)_일반음식점					8,383	8,383	2,640	2,640	5,280	5,280	4	4	2	2	
	3-4(2)	3-4(2)	매점	매점	664	664	130	130	260	260	2	4	1	1	
계 (3-4)_매점					664	664	130	130	260	260	4	4	1	1	
상 가 시 설 지 구	3-5(1)	3-5(1)	상가시설	상가시설	1,016	1,016	304	304	1,016	1,016	4	4	1	1	
	3-5(2)	3-5(2)	상가시설	상가시설	1,018	1,018	305	305	1,018	1,018	4	4	1	1	
	3-5(3)	3-5(3)	상가시설	상가시설	1,429	1,429	428	428	1,429	1,429	4	4	1	1	
	3-5(4)	3-5(4)	상가시설	상가시설	1,613	1,613	483	483	1,613	1,613	4	4	1	1	
	3-5(5)	3-5(5)	상가시설	상가시설	4,205	4,205	1,261	1,261	4,205	4,205	4	4	1	1	
	3-5(6)	3-5(6)	상가시설	상가시설	718	718	215	215	718	718	4	4	1	1	
	3-5(7)	3-5(7)	상가시설	상가시설	691	691	207	207	691	691	4	4	1	1	
	3-5(8)	3-5(8)	상가시설	상가시설	1,412	1,412	423	423	1,412	1,412	4	4	1	1	
	3-5(9)	3-5(9)	상가시설	상가시설	768	768	230	230	768	768	4	4	1	1	
	3-5(10)	3-5(10)	상가시설	상가시설	748	748	224	224	748	748	4	4	1	1	
	3-5(11)	3-5(11)	상가시설	상가시설	747	747	224	224	747	747	4	4	1	1	
	3-5(12)	3-5(12)	상가시설	상가시설	1,502	1,502	450	450	1,502	1,502	4	4	1	1	
	3-5(13)	3-5(13)	상가시설	상가시설	2,283	2,283	684	684	2,283	2,283	4	4	1	1	
	3-5(14)	3-5(14)	상가시설	상가시설	1,508	1,508	452	452	1,508	1,508	4	4	1	1	
	3-5(15)	3-5(15)	상가시설	상가시설	1,430	1,430	428	428	1,430	1,430	4	4	1	1	
	3-5(16)	3-5(16)	상가시설	상가시설	1,222	1,222	366	366	1,222	1,222	4	4	1	1	
	3-5(17)	3-5(17)	상가시설	상가시설	755	755	226	226	755	755	4	4	1	1	
	3-5(18)	3-5(18)	상가시설	상가시설	1,666	1,666	499	499	1,666	1,666	4	4	1	1	

구분	번호		세부시설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규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동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상가 시설 지구	3-5(19)	3-5(19)	상가시설	상가시설	916	916	274	274	916	916	4	4	1	1	
	3-5(20)	3-5(20)	상가시설	상가시설	918	918	275	275	918	918	4	4	1	1	
	3-5(21)	3-5(21)	상가시설	상가시설	1,105	1,105	331	331	1,105	1,105	4	4	1	1	
	3-5(22)	3-5(22)	상가시설	상가시설	1,532	1,532	459	459	1,532	1,532	4	4	1	1	
	3-5(23)	3-5(23)	상가시설	상가시설	751	751	225	225	751	751	4	4	1	1	
	3-5(24)	3-5(24)	상가시설	상가시설	1,534	1,534	460	460	1,534	1,534	4	4	1	1	
	3-5(25)	3-5(25)	상가시설	상가시설	1,720	1,720	515	515	1,720	1,720	4	4	1	1	
	3-5(26)	3-5(26)	상가시설	상가시설	562	562	168	168	562	562	4	4	1	1	
	3-5(27)	3-5(27)	상가시설	상가시설	509	509	152	152	509	509	4	4	1	1	
	3-5(28)	3-5(28)	상가시설	상가시설	612	612	183	183	612	612	4	4	1	1	
	3-5(29)	3-5(29)	상가시설	상가시설	4,353	1,491	1,305	447	4,353	1,491	4	4	1	1	
	3-5(30)	3-5(30)	상가시설	상가시설	1,900	1,900	569	569	1,900	1,900	4	4	1	1	
	3-5(31)	3-5(31)	상가시설	상가시설	927	927	278	278	927	927	4	4	1	1	
	3-5(32)	3-5(32)	상가시설	상가시설	1,241	1,241	372	372	1,241	1,241	4	4	1	1	
	-	3-5(33)	-	상가시설	-	957	-	287	-	957	-	4	-	1	
	-	3-5(34)	-	상가시설	-	829	-	248	-	829	-	4	-	1	
-	3-5(35)	-	상가시설	-	990	-	297	-	990	-	4	-	1		
계 (3-5)_상가시설					43,311	43,225	12,975	12,949	43,311	43,225	4	4	32	35	
소 계					9,781	9,781	1,620	1,620	3,240	3,240	-	-	6	6	
운동 시설 지구	4-1	4-1	유희시설 (금강랜드) (관리시설 및 매점, 휴게음식점 포함)	유희시설 (금강랜드) (관리시설 및 매점, 휴게음식점 포함)	8,574	8,574	1,620	1,620	3,240	3,240	4층이하 (유기시설 40m이하)	4층이하 (유기시설 40m이하)	6	6	
	4-3	4-3	테니스장	테니스장	1,207	1,207	-	-	-	-	-	-	-	-	
소 계					189,115	192,536	5,260	5,260	11,080	11,080	-	-	27	27	
휴양 문화 시설 지구	5-6	5-6	조각 (기념비)	조각 (기념비)	2,521	2,521	-	-	-	-	-	-	-	-	
	5-7	5-7	공원 (어린이)	공원 (어린이)	1,192	1,192	-	-	-	-	-	-	-	-	
	5-9	5-9	체험학습 장 (편의시설 소매점포함)	체험학습장 (편의시설 소매점포함)	650	650	110	110	220	220	2	2	1	1	
	5-10	5-10	자연생태 체험단지	자연생태 체험단지	65,157	65,157	1,640	1,640	3,840	3,840	4	4	6	6	

구 분	번호		세부시설		부지면적(㎡)		시설면적(㎡)				규모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동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휴양 문화 시설 지구	5-11	5-11(1)	바이크 캠핑장	야영장	25,267	25,267	510	510	1,020	1,020	4	4	5	5	
	-	5-11(2)	-	야영장	-	3,421	-	-	-	-	-	-	-	-	
	계 (5-11)_야영장				25,267	28,688	510	510	1,020	1,020	4	4	5	5	
	5-12	5-12	철새조망 대	철새조망대	38,697	38,697	3,000	3,000	6,000	6,000	11	11	15	15	
	5-13	5-13	야생화단 지	야생화단지	55,631	55,631	-	-	-	-	-	-	-	-	
소 계					189,298	189,534	164	164	164	164	-	-	1	1	
기타 시설 지구	6-1	6-1	녹지	녹지	187,782	188,018	-	-	-	-	-	-	-	-	
	6-3	6-3	기타시설	기타시설	1,516	1,516	164	164	164	164	1	1	1	1	

* 상가시설은 전망대 · 매점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음악감상실 · 일반목욕장 · 노래연습장 · 사진관 · 약국 · 간이의료시설 · 금융업소를 설치 할 수 있음.

□ 군산시 도시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 유원지

- 유원지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2	금강호 유원지	군산시 성산면 438-11번지 성덕리 일원	648,380	-	648,380	전북고146(02.4.6)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총괄표

구분	토지이용계획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면적(㎡)		비율(%)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648,380	648,380	100.0	100.0	38,619	38,485	107,736	107,292		
소계	459,082	458,846	70.8	70.8	38,455	38,321	107,572	107,128		
세부시설	관리시설	166,184	162,971	25.6	25.1	1,949	1,949	2,757	2,757	
	휴양시설	68,753	71,816	10.6	11.1	14,501	14,393	42,884	42,526	
	편익시설	52,358	52,272	8.1	8.1	15,745	15,719	48,851	48,765	
	유희시설	8,574	8,574	1.3	1.3	1,620	1,620	3,240	3,240	
	운동시설	1,207	1,207	0.2	0.2	-	-	-	-	
	특수시설	162,006	162,006	25.0	25.0	4,640	4,640	9,840	9,840	
녹지	187,782	188,018	29.0	29.0	-	-	-	-		
기타시설	1,516	1,516	0.2	0.2	164	164	164	164		

다.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시설총괄조서(변경)

구분	번호		세부시설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규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동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648,380	648,380	38,619	38,485	107,736	107,292	-	-	102	105	
소 계					166,184	162,971	1,949	1,949	2,757	2,757	-	-	15	15	
관리 시설	1-1	1-1	주차장	주차장	38,687	38,687	-	-	-	-	-	-	-	-	
	1-2	1-2	광장	광장	18,994	15,573	-	-	-	-	-	-	-	-	
	1-3	1-3	화장실	화장실	2,373	2,373	261	261	261	261	1	1	3	3	
	1-5	1-5	하구둑 관리시설	하구둑 관리시설	1,540	1,540	264	264	414	414	2	2	2	2	
	1-6	1-6	한국 농어촌공사	한국 농어촌공사	10,462	10,462	1,360	1,360	2,018	2,018	1,2,5	1,2,5	9	9	
	1-8	1-8	관리사무 소	관리사무 소	200	200	64	64	64	64	1	1	1	1	
	-	-	도로	도로	93,928	94,136	-	-	-	-	-	-	-	-	
소 계					68,753	71,816	14,501	14,393	42,884	42,526	-	-	24	24	
휴양 시설	2-1	2-1	관광호텔	관광호텔	19,832	19,832	5,948	5,948	19,832	19,832	7	7	3	3	
	2-8	2-8	공원 (어린이)	공원 (어린이)	1,192	1,192	-	-	-	-	-	-	-	-	
	2-9	2-9	체험학습 장 (편의시설: 소매점포 함)	체험학습 장 (편의시설: 소매점포 함)	650	650	110	110	220	220	2	2	1	1	
	2-10	2-10	향토휴집 체험단지	향토휴집 체험단지	4,436	4,436	1,773	1,773	4,436	4,436	3	3	7	7	
	2-11	2-11	호텔	호텔	7,901	7,543	2,370	2,262	7,901	7,543	5	5	1	1	
	2-12	2-12	관광펜션	관광펜션	9,475	9,475	3,790	3,790	9,475	9,475	3	3	7	7	
	2-13	2-13	마이크 캠핑장	야영장	25,267	28,688	510	510	1,020	1,020	4	4	5	5	
	소 계					52,358	52,272	15,745	15,719	48,851	48,765	-	-	35	38
편의 시설	3-2	3-2	일반음식 점	일반음식 점	8,383	8,383	2,640	2,640	5,280	5,280	4	4	2	2	
	3-4	3-4	매점	매점	664	664	130	130	260	260	4	4	1	1	
	3-5	3-5	상가시설	상가시설	43,311	43,225	12,975	12,949	43,311	43,225	4	4	32	35	

구분	번호		세부시설		부지면적(㎡)		시설면적(㎡)				규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동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 계					8,574	8,574	1,620	1,620	3,240	3,240	-	-	6	6	
유희시설	4-1	4-1	유희시설 (금강랜드) (관리시설 및 매점, 휴게음식 점 포함)	유희시설 (금강랜드) (관리시설 및 매점, 휴게음식 점 포함)	8,574	8,574	1,620	1,620	3,240	3,240	4층이하 (유기시설 40m이하)	4층이하 (유기시설 40m이하)	6	6	
	소 계					1,207	1,207	-	-	-	-	-	-	-	-
운동시설	5-2	5-2	테니스장	테니스장	1,207	1,207	-	-	-	-	-	-	-	-	
	소 계					162,006	162,006	4,640	4,640	9,840	9,840	-	-	21	21
특수시설	6-1	6-1	조각 (기념비)	조각 (기념비)	2,521	2,521	-	-	-	-	-	-	-	-	
	6-3	6-3	자연생태 체험단지	자연생태 체험단지	65,157	65,157	1,640	1,640	3,840	3,840	4	4	6	6	
	6-4	6-4	철새조망 대	철새조망 대	38,697	38,697	3,000	3,000	6,000	6,000	11	11	15	15	
	6-5	6-5	야생화단 지	야생화단 지	55,631	55,631	-	-	-	-	-	-	-	-	
녹지	7	7	녹지	녹지	187,782	188,018	-	-	-	-	-	-	-	-	
기타	9	9	기타시설	기타시설	1,516	1,516	164	164	164	164	1	1	1	1	

※ 변경 사유

구분	번호		세부시설		부지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유원지	1-2	1-2	광장	광장	18,994	△3,421	15,573	· 시민 및 관광객들의 여가수요 충족을 위하여 현재 이용실태를 감안하여 시설계획에 반영하여 이용객 편의 도모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및 관광 시설명으로 명칭변경
	2-13	2-13	바이크 캠핑장	야영장	25,267	3,421	28,688	
	2-11	2-11	호텔	호텔	7,901	△358	7,543	· 민간(토지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지적현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수정
	3-5	3-5	상가시설	상가시설	43,311	86	43,225	
	7	7	녹지	녹지	187,782	236	188,018	
-	-	도로	도로	93,928	208	94,136		

2) 세부시설조서(변경)

구분	번호		세부시설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규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동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총	계				648,380	648,380	38,619	38,485	107,736	107,292	-	-	102	105		
	소 계				166,184	162,971	1,949	1,949	2,757	2,757	-	-	15	15		
관 리 시 설	1-1(1)	1-1(1)	주차장	주차장	10,601	10,601	-	-	-	-	-	-	-	-		
	1-1(3)	1-1(3)	주차장	주차장	3,090	3,090	-	-	-	-	-	-	-	-		
	1-1(4)	1-1(4)	주차장	주차장	1,748	1,748	-	-	-	-	-	-	-	-		
	1-1(5)	1-1(5)	주차장	주차장	4,006	4,006	-	-	-	-	-	-	-	-		
	1-1(6)	1-1(6)	주차장	주차장	10,276	10,276	-	-	-	-	-	-	-	-		
	1-1(7)	1-1(7)	주차장	주차장	8,099	8,099	-	-	-	-	-	-	-	-		
	1-1(8)	1-1(8)	주차장	주차장	867	867	-	-	-	-	-	-	-	-		
	계 (1-1)_주차장				38,687	38,687	-	-	-	-	-	-	-	-	-	
	1-2(1)	1-2(1)	광장	광장	6,286	6,286	-	-	-	-	-	-	-	-		
	1-2(2)	1-2(2)	광장	광장	4,179	4,179	-	-	-	-	-	-	-	-		
	1-2(3)	1-2(3)	광장	광장	4,503	4,503	-	-	-	-	-	-	-	-		
	1-2(4)	1-2(4)	광장	광장	605	605	-	-	-	-	-	-	-	-		
	1-2(7)	1-2(7)	광장	광장	1,551	-	-	-	-	-	-	-	-	-		
	1-2(8)	1-2(8)	광장	광장	1,870	-	-	-	-	-	-	-	-	-		
	계 (1-2)_광장				18,994	15,573	-	-	-	-	-	-	-	-	-	
	1-3(1)	1-3(1)	화장실	화장실	1,173	1,173	81	81	81	81	1	1	1	1		
	1-3(3)	1-3(3)	화장실	화장실	486	486	120	120	120	120	1	1	1	1		
	1-3(5)	1-3(5)	화장실	화장실	714	714	60	60	60	60	1	1	1	1		
계 (1-3)_화장실				2,373	2,373	261	261	261	261	1	1	3	3			
1-5	1-5	하구둑 관리시설	하구둑 관리시설	1,540	1,540	264	264	414	414	2	2	2	2			
1-6	1-6	한국 농어촌공사	한국 농어촌 공 사	10,462	10,462	1,360	1,360	2,018	2,018	1,2,5	1,2,5	9	9			
1-8	1-8	관리사무소	관 리 사 무 소	200	200	64	64	64	64	1	1	1	1			
-	-	도로	도로	93,928	94,136	-	-	-	-	-	-	-	-			
	소 계				68,753	65,690	14,501	14,393	42,884	42,526	-	-	24	24		
휴 양 시 설	2-1	2-1	관광호텔	관광호텔	19,832	19,832	5,948	5,948	19,832	19,832	7	7	3	3		
	2-8	2-8	공원 (어린이)	공원 (어린이)	1,192	1,192	-	-	-	-	-	-	-	-		
	2-9	2-9	체험학습장 (편의시설: 소매점포함)	체험학습장 (편의시설:소 매점포함)	650	650	110	110	220	220	2	2	1	1		
	2-10	2-10	향토홍집 체험단지	향토홍집 체험단지	4,436	4,436	1,773	1,773	4,436	4,436	3	3	7	7		
	2-11	2-11	호텔	호텔	7,901	7,543	2,370	2,262	7,901	7,543	5	5	1	1		
	2-12	2-12	관광펜션	관광펜션	9,475	9,475	3,790	3,790	9,475	9,475	3	3	7	7		
	2-13	2-13(1)	바이크 캠핑장	야영장	25,267	25,267	510	510	1,020	1,020	4	4	5	5		
	-	2-13(2)	-	야영장	-	3,421	-	-	-	-	-	-	-	-		
계 (2-13)_야영장				25,267	28,688	510	510	1,020	1,020	4	4	5	5			

구 분	번호		세부시설		부지면적 (㎡)		시설면적(㎡)				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동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 계				52,358	52,272	15,745	15,719	48,851	48,765	-	-	35	38	
	3-2(1)	3-2(1)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8,383	8,383	2,640	2,640	5,280	5,280	4	4	2	2	
	계 (3-2)_일반음식점				8,383	8,383	2,640	2,640	5,280	5,280	4	4	2	2	
	3-4(2)	3-4(2)	매점	매점	664	664	130	130	260	260	4	4	1	1	
	계 (3-4)_매점				664	664	130	130	260	260	4	4	1	1	
	3-5(1)	3-5(1)	상가시설	상가시설	1,016	1,016	304	304	1,016	1,016	4	4	1	1	
	3-5(2)	3-5(2)	상가시설	상가시설	1,018	1,018	305	305	1,018	1,018	4	4	1	1	
	3-5(3)	3-5(3)	상가시설	상가시설	1,429	1,429	428	428	1,429	1,429	4	4	1	1	
	3-5(4)	3-5(4)	상가시설	상가시설	1,613	1,613	483	483	1,613	1,613	4	4	1	1	
	3-5(5)	3-5(5)	상가시설	상가시설	4,205	4,205	1,261	1,261	4,205	4,205	4	4	1	1	
	3-5(6)	3-5(6)	상가시설	상가시설	718	718	215	215	718	718	4	4	1	1	
	3-5(7)	3-5(7)	상가시설	상가시설	691	691	207	207	691	691	4	4	1	1	
	3-5(8)	3-5(8)	상가시설	상가시설	1,412	1,412	423	423	1,412	1,412	4	4	1	1	
편 의 시 설	3-5(9)	3-5(9)	상가시설	상가시설	768	768	230	230	768	768	4	4	1	1	
	3-5(10)	3-5(10)	상가시설	상가시설	748	748	224	224	748	748	4	4	1	1	
	3-5(11)	3-5(11)	상가시설	상가시설	747	747	224	224	747	747	4	4	1	1	
	3-5(12)	3-5(12)	상가시설	상가시설	1,502	1,502	450	450	1,502	1,502	4	4	1	1	
	3-5(13)	3-5(13)	상가시설	상가시설	2,283	2,283	684	684	2,283	2,283	4	4	1	1	
	3-5(14)	3-5(14)	상가시설	상가시설	1,508	1,508	452	452	1,508	1,508	4	4	1	1	
	3-5(15)	3-5(15)	상가시설	상가시설	1,430	1,430	428	428	1,430	1,430	4	4	1	1	
	3-5(16)	3-5(16)	상가시설	상가시설	1,222	1,222	366	366	1,222	1,222	4	4	1	1	
	3-5(17)	3-5(17)	상가시설	상가시설	755	755	226	226	755	755	4	4	1	1	
	3-5(18)	3-5(18)	상가시설	상가시설	1,666	1,666	499	499	1,666	1,666	4	4	1	1	
	3-5(19)	3-5(19)	상가시설	상가시설	916	916	274	274	916	916	4	4	1	1	
	3-5(20)	3-5(20)	상가시설	상가시설	918	918	275	275	918	918	4	4	1	1	
	3-5(21)	3-5(21)	상가시설	상가시설	1,105	1,105	331	331	1,105	1,105	4	4	1	1	
	3-5(22)	3-5(22)	상가시설	상가시설	1,532	1,532	459	459	1,532	1,532	4	4	1	1	
	3-5(23)	3-5(23)	상가시설	상가시설	751	751	225	225	751	751	4	4	1	1	

구분	번호		세부시설		부지면적(㎡)		시설면적(㎡)				규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동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편의시설	3-5(24)	3-5(24)	상가시설	상가시설	1,534	1,534	460	460	1,534	1,534	4	4	1	1	
	3-5(25)	3-5(25)	상가시설	상가시설	1,720	1,720	515	515	1,720	1,720	4	4	1	1	
	3-5(26)	3-5(26)	상가시설	상가시설	562	562	168	168	562	562	4	4	1	1	
	3-5(27)	3-5(27)	상가시설	상가시설	509	509	152	152	509	509	4	4	1	1	
	3-5(28)	3-5(28)	상가시설	상가시설	612	612	183	183	612	612	4	4	1	1	
	3-5(29)	3-5(29)	상가시설	상가시설	4,353	1,491	1,305	447	4,353	1,491	4	4	1	1	
	3-5(30)	3-5(30)	상가시설	상가시설	1,900	1,900	569	569	1,900	1,900	4	4	1	1	
	3-5(31)	3-5(31)	상가시설	상가시설	927	927	278	278	927	927	4	4	1	1	
	3-5(32)	3-5(32)	상가시설	상가시설	1,241	1,241	372	372	1,241	1,241	4	4	1	1	
		3-5(33)	-	상가시설	-	957	-	287	-	957	-	4	-	1	
		3-5(34)	-	상가시설	-	829	-	248	-	829	-	4	-	1	
		3-5(35)	-	상가시설	-	990	-	297	-	990	-	4	-	1	
	계 (3-5)_상가시설					43,311	43,225	12,975	12,949	43,311	43,225	4	4	32	35
소 계					8,574	8,574	1,620	1,620	3,240	3,240	-	-	6	6	
유희시설	4-1	4-1	유희시설 (금강랜드) (관리시설 및 매점 게엄식점 포함)	유희시설 (금강랜드) (관리시설 및 매점 휴게음식 점포함)	8,574	8,574	1,620	1,620	3,240	3,240	4층이하 (유기시설 40m이하)	4층이하 (유기시설 40m이하)	6	6	
	운동소 계					1,207	1,207	-	-	-	-	-	-	-	-
특수시설	5-2	5-2	테니스장	테니스장	1,207	1,207	-	-	-	-	-	-	-	-	
	소 계					162,006	162,006	4,640	4,640	9,840	9,840	-	-	21	21
특수시설	6-1	6-1	조각 (기념비)	조각 (기념비)	2,521	2,521	-	-	-	-	-	-	-	-	
	6-3	6-3	자연생태 체험단지	자연생태 체험단지	65,157	65,157	1,640	1,640	3,840	3,840	4	4	6	6	
	6-4	6-4	철새조망 대	철새조망대	38,697	38,697	3,000	3,000	6,000	6,000	11	11	15	15	
	6-5	6-5	야생화단 지	야생화단지	55,631	55,631	-	-	-	-	-	-	-	-	
녹지	7	7	녹지	녹지	187,782	188,018	-	-	-	-	-	-	-		
기타	9	9	기타시설	기타시설	1,516	1,516	164	164	164	164	1	1	1	1	

* 편의시설(상가시설)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58조 2항 6호(편의시설)의 시설 중 전망대·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음악감상실·일반목욕장·노래연습장·사진관·약국·간이의료시설·금융업소를 설치 할 수 있음

군산시 공고 제2015 -999 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공고

군산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광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6월 일

- 1. 공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광장) 사업
 - 2) 명 칭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광장) 조성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 도 로 : 45,163㎡ (총 12개 노선)
 - 2) 녹 지 : 16,687㎡ (총 6개)
 - 3) 광 장 : 3,042㎡ (총 1개)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대
 - 2) 사업시행자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대표이사 박건표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1) 대로 1-4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450-13	대	11,477	20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2	조촌동	450-14	대	970	6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3	조촌동	465-1	대	34	24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4	조촌동	465-5	구	261	17	군산시					
5	조촌동	471-2	구	13,976	30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	조촌동	711-9	도	300	15	국토교통부					
7	조촌동	716-2	구	288	17	국토교통부					
합계				27,306	401						

2) 대로 2-4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구암동	320-4	장	387	82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주)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신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0-1		
								캐피탈(주)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8		
2	구암동	321-8	대	379	33	군산시					
3	조촌동	2-6	장	136,947	111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합계				137,713	226						

3) 대로 3-6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6	장	136,947	42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2	조촌동	439-4	도	1,049	458	군산시					
3	조촌동	447-4	구	182	42	군산시					
4	조촌동	450-3	구	380	86	군산시					
5	조촌동	465-5	구	261	67	군산시					
6	조촌동	472-4	잡	89	24	군산시					
7	조촌동	473-2	도	770	200	군산시					
8	조촌동	474-5	대	175	22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9	조촌동	479-3	구	273	69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10	조촌동	711-9	도	300	14	국토교통부					
11	조촌동	716-2	구	288	16	국토교통부					
합계				140,714	1,040						

4) 대로 3-47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구암동	320-4	장	387	73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한국산업은행	서울시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주)우리은행	서울시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신한은행	서울시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주)하나은행	서울시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신한캐피탈(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0-1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시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8		
2	구암동	321-8	대	379	104	군산시					
3	조촌동	2	장	288,000	816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한국산업은행	서울시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주)우리은행	서울시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신한은행	서울시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주)하나은행	서울시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신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캐피탈(주)	고잔동 530-1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시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8		
4	조촌동	2-6	장	136,947	17,425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5	조촌동	479-3	구	273	157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합계				425,986	18,575						

5) 대로 3-48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	장	288,000	4,613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한국산업은행	서울시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주)우리은행	서울시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신한은행	서울시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주)하나은행	서울시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신한캐피탈(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0-1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시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8										
2	조촌동	2-6	장	136,947	4,985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3	조촌동	471-2	구	13,976	46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	조촌동	651-4	대	7,220	381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5	조촌동	651-8	구	586	5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	조촌동	659	대	6,608	1,190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7	조촌동	661-2	구	982	202	이서운	군산시 나운동 155-1 우신동영아파트 105동 1502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산지청		압류	지분3/9
								유현수	군산시 나운동 109-6 나운4차 현대아파트 401동 1203호	근저당	
								김미숙	군산시 나운동 155-1 우신동영아파트 105동 1502호		지분2/9
								김병관	군산시 나운동 155-1 우신동영아파트 105동 1502호	유현수	군산시 조촌동 771 신우하나로 아파트 1220호
김미자	군산시 나운동 155-1 우신동영아파트 105동 1502호		근저당	지분2/9							
합계				454,319	11,883						

6) 종로 2-142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	장	288,000	1,594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한국산업은행	서울시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주)우리은행	서울시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신한은행	서울시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주)하나은행	서울시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신한캐피탈(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0-1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시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8		
2	조촌동	2-6	장	136,976	991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합계				424,976	2,585						

7) 종로 2-143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6	장	136,947	2,768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2	조촌동	450-13	대	11,477	1,394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3	조촌동	450-2	대	7,701	653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4	조촌동	471-2	구	13,976	45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합계				170,101	5,273						

8) 종로 2-147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6	장	136,947	1,449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합계				136,947	1,449						

9) 중로 2-148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6	장	136,947	1,889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2	조촌동	439-4	구	1,049	108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합계				425,996	1,997						

10) 중로 3-74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	장	288,000	602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한국산업은행 (주)우리은행 (주)신한은행 (주)하나은행 신한캐피탈(주)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8		근저당
합계				288,000	602						

11) 중로 3-75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6	장	136,947	838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합계				136,947	838						

12) 소로 3-773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6	장	136,947	294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합계				136,947	294						

나. 공간시설

(1) 녹지

1) 완충녹지108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구암동	321-14	대	453	17	군산시					
2	구암동	321-15	도	653	24	군산시					
3	구암동	512-20	도	218	13	군산시					
4	구암동	513-1	장	2,460	656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5	구암동	513-5	대	1,834	867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6	구암동	516-1	대	413	253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7	구암동	607-1	구	205	52	국토교통부					
8	구암동	608-1	도	169	19	국토교통부					
9	구암동	609-1	구	33	14	국토교통부					
10	조촌동	2-6	장	136,947	779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11	조촌동	649-2	대	2,420	368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12	조촌동	651-8	구	586	10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	조촌동	659	대	6,608	110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14	조촌동	660-10	대	678	333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15	조촌동	660-8	철	750	66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16	조촌동	661-5	철	122	81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17	조촌동	712	도	56	14	국토교통부					
18	조촌동	732	구	1,455	87	국토교통부					
합계				156,060	3,264						

2) 완충녹지113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450-13	대	11,477	845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혜성2빌딩)	신탁	
2	조촌동	450-14	대	970	154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혜성2빌딩)	신탁	
3	조촌동	471-2	구	13,976	83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	조촌동	711-9	도	300	28	국토교통부					
5	조촌동	716-2	구	288	6	국토교통부					
합계				27,011	1,865						

3) 완충녹지114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450-15	대	9,917	999	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을지로1가)	근저당	
2	조촌동	450-16	대	2,849	445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혜성2빌딩)	신탁	
3	조촌동	471-2	구	13,976	11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	조촌동	659	대	6,608	1,420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혜성2빌딩)	신탁	
5	조촌동	659-1	대	2,044	245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혜성2빌딩)	신탁	
합계				35,394	3,220						

4) 완충녹지115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6	장	136,947	516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2	조촌동	450-15	대	9,917	342	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을지로1가)	근저당	
3	조촌동	450-16	대	2,849	438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4	조촌동	450-2	대	7,701	1,094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합계				157,414	2,390						

5) 완충녹지116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6	장	136,947	766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합계				136,947	766						

6) 연결녹지117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6	장	136,947	4,589	페이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합계				136,947	4,589						

(2) 광장

1) 광장32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6	장	136,947	584	페이퍼코리아(주)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2	조촌 동	439-4	구	1,049	154	페이퍼 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3	조촌 동	447-2	전	23	23	군산시					
4	조촌 동	447-3	구	126	126	페이퍼 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5	조촌 동	447-4	구	182	50	군산시					
6	조촌 동	450-13	대	11,477	130	페이퍼 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7	조촌 동	450-14	대	970	306	페이퍼 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8	조촌 동	450-2	대	7,701	296	페이퍼 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9	조촌 동	450-3	구	380	127	군산시					
10	조촌 동	450-5	구	76	76	군산시					
11	조촌 동	450-6	대	159	159	페이퍼 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12	조촌 동	465-1	대	34	10	페이퍼 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13	조촌 동	465-5	구	261	38	군산시					
14	조촌 동	472-4	잡	89	62	군산시					
15	조촌 동	472-7	구	23	23	군산시					
16	조촌 동	472-8	잡	40	40	군산시					
17	조촌 동	473-2	도	770	433	군산시					
18	조촌 동	474-3	구	139	139	군산시					
19	조촌 동	474-5	대	175	121	페이퍼 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	코리아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신탁	
20	조촌 동	711-9	도	300	67	국토교통부					
21	조촌 동	716-2	구	288	78	국토교통부					
합 계				161,209	3,042						

군산시 공고 제2015 - 1013호

도로지정(변경)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제 목 : 도로지정 변경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2015.06.17. ~ 2015.07.01.
4. 공고대상

소재지	도로너비	길이	도로편입면적(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동의여부
			변경전	변경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854-4	4.0m	17m	34	7	서석*	동의

5.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도로지정과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군사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계(☎063-454-37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06. 17.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15 - 1046호

중동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고

1. 군산시 중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1.

군 산 시 장

가. 정비구역 지정(안)

①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중동	군산시 중동지구 정비구역	군산시 중동 273-48 일원	-	(중) 76,464	(중) 76,464	

- ② 지정사유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나. 정비계획(안) 주요내용

- 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②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③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④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다. 공람 및 주민의견청취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라.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군산시청 건축과

마. 관련도서 열람 : 군산시청 건축과 비치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 454-3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공고 제2015 - 13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사유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22-42
 - 면 적 : 30m²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30	30						
1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22-42	대지	30	30	담장 및 유류 배관	계획관리 지역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22-27	강동자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46) 에
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